### ■ 유권해석 사례

## 1. 집단궁급시설과 특정사용시설의 구분 관련 질의

질 의

 기존공동주택(5개동 161세대)에 소형저장탱크(1.6톤×3기)를 한곳에 설치하여 체적거래 시설로 전환할 경우 집단공급사업허가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신고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수용가구수가 70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내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집단공급사업허가 대상에 해당함. 다만, 동조 제1호다목에 의거 전체수용가구수가 70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내의 수요자라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및 동조 제3호에 의거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중 공동저장시설에 해당됨 (인터넷 질의·회신, 2003.06.11)

#### 2. 사용시설의 저장설비 설치 관련 질의

## 질 의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18의 제5호의2에 의하면 『동일건축물내에 가스사용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1개소에 저장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 저장설비를 각각의 개별상가에 설치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 동 규정 후단의 단서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란 어떤 경우이며 그에 대한 판단기관은?

- 동일 건축물내에 2개소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위반되어 동 법 제48조 제2항제4호에 의해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동 별표 5의2 후단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상 또는 안전 관리상 부득 이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장소에 저장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여기서 의미하는 구조상 또는 안전관리상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과 같음
  - 1. 공간이 협소하여 건축물 1개 동의 용기를 하나의 용기집합설비에 모두 집합할 수 없는 경우
  - 2. 저장능력이 500kg 이상이 되어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 설치시 탱크로리 및 벌크로리의 통행이 어려운 경우
  - 3. 배관길이가 길어져 압력손실로 인하여 정상공급이 어려운 경우
  - 4. 사용업소가 많아 소비량 산정시 배관의 관경이 80A 이상이 되는 경우
  - 5. 행정관청이 인정할 경우

- 6.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 사용시설이 단계적으로 설치되어 신규 사용자가 기존 저장설비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 나. 저장설비의 공급자 또는 소유자가 다름으로써 신규 사용자에게 기존 저장 설비의 사용을 불허할 경우
  - 다. 기존 조정기의 용량이 맞지 않아 추가적인 접속 사용이 곤란할 경우
  - 라. 기타 현장여건상 하나의 저장설비를 공동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 위에서 언급한 제1호내지 제6호에의 해당여부는 관할 행정관청 또는 한국 가스안전공사가 동 건축물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에안57253-505, 2002.07.11)

### 3. 사용시설의 저장설비에 대한 저장량 산정은?

## 질 의

 관내 음식점중 1층과 지하를 대표자 1인이 운영하면서 1층과 지하에 각각 절체기를 설치한 집합대 300kg를 각각 설치 및 공사의 완성 검사에 각각 합격한 후 사용하고 있음. 이런 경우 해당 음식점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저장량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 관련 별표2에 의하여 『저장능력 250kg를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중 공동저장외의시설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확보와 위험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LPG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이 경우의 저장능력 산정시는 동일 업소(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신고가 하나로 된 경우 포함)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 또한, 저장시설이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 업소내에서 사용시의 저장 능력은 당해 업소내 모든 저장능력을 합산(자동절체기가 설치된 용기집합설비의 저장능력은 1/2)하여 산정하게 됨(인터넷 질의·회신, 2003.11.25)

### 4. "주거용"의 의미 및 부적합 가스사용시설의 개선은?

## 질 의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호의 후단 규정인『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서 「주거용」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 ㅇ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란 보호시설 내의 독립된 세대원이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생활방편으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가정용"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노인정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노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주거용 여부와 관계없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시 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기준에는 퓨즈콕을 설치하고 금속배 관을 사용(호스는 3m이상 사용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맞게 시 설을 개선하셔야 함. 참고로,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서 규정한 액화석유가 스특정사용자에 해당할 경우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시설에 대한 완 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음(에안57253-579, 2002.08.05)

## 5. 포장마차 등도 LP가스사용시설의 법규 적용을 받는지?

질 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18의 LPG사용시설의 시설기준및기술기준의 적용범위를 차량등으로 이동하며 영업하는 시설(예:포장마차) 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용된다면 동 시설이 동법시행규칙 별표18의 배관설치, 호스길이, 화기와의 이격거리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의 여부

답 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동 법시행규칙 별표18의 LPG사용시설의 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배관의 설치,호스길이3m이하의 사용 및 LPG용기와 화기취급장소는 8m이상의 우회거리유지등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인터넷 질의·회신, 2002.04.24)

## 6. LP가스특정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질 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LP가스공급은 체적판매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을 때 가스공급자 외에 LP가스특정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지 및 있다면 그 내용은?

답 변

○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야 하는 공동 주택에서 용기에 의해 LP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의 LP가스사용자에 해당하여 동법시행규칙 별표18(액화 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 기준및기술기준)의 제1호나목 및 제1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집합시설 (2이상의 용기를 집합하여 LP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용기집합 장치·자동절체기 및 이를 연결하는 배관 기타 부속설비)과 가스계량기를 설 치하여야 하며, 동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지 않고 공급한 가스공급자와는 별도로, 동법 제48조 제2항제4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인터넷 질의·회신, 2002.08.12)

## 7. 연료용으로 LPG를 사용하는 시설은?

질 의

 A사는 동 사에서 생산되는 LPG를 배관을 통하여 연료용으로 B사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B사에서는 LPG기화기 및 써지드럼을 설치하여 기화된 LPG를 연료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B사는 액화 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상의 인허가 대상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 귀사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적합하게 시설및기술기준을 갖추고 B사에 LPG를 공급하는 경우.
- 연료용으로 LPG를 공급받는 B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아야하는 충전 또는 판매사업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 동법령상 액화석유가스사용자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B사가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할 시는 액화석 유가스특정사용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을 대상이 됨(다만, 행정관청의 인허가대상은 아님).(인터넷 질의·회신, 2003.08.18)